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: 173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 자연학습과로 편제되어 운영하였으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지도 감독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어 관리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자연학습원의 지도·감독부서 조정
 - “산림환경연구소장”을 ⇒ “체육청소년과장”으로, “소장”을 ⇒ “과장”으로 함

의안전문 : 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관련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체육청소년과장(이하 “과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내지 제4항, 제9조제2항·제3항 및 제11조제1항중 “소장”을 각각 “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5조(운영계획) ①산림환경연구 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| <p>제5조(운영계획)①<u>체육청소년과장</u> (이하 “과장”이라 한다)… ②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6조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·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이 조례 시행 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연수신청서를 <u>소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6조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과장..... </p> |
| <p>③소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연수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연수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.</p> | <p>③과장</p> |
| <p>④소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 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 | <p>④과장..... 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9조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사용신청서를 <u>소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<u>소장</u>은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9조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③<u>과장</u></p> |
| <p>제11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① <u>소장</u>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~2 (생략)</p> | <p>제11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① <u>과장</u>.....</p> <p>1~2(현행과 같음)</p> |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1조(문화관광국)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4. 건전 청소년 육성

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

제13조(문화관광국에 두는 과) ①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, 체육청소년과, 관광과, 건축문화과를 둔다.

②~③(생략)

④체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1. 자연학습원 지도감독 업무